

보 도 자 료

근로기준법도, 정부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임금설계, 그나마 지급하지도 않아 올해초, 대량해고에 이어 열악한 비정규직 처우 재차 드러나

문의: 주낙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정책위원장 (010-5296-8706)

1. 정부세종청사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설계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정부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올해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지난해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근무일수도 하루 적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2. 임금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렇게 산정된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실태는 올해 초 대량해고사태에 이어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고 있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지부/2-3단계 시설관리지부/특수경비지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단체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번 실태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근로감독 시행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함.
3.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할 것임을 재차 강조함. 끝.

- 별첨자료■ 1. 임금설계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관련 설명자료
2.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 위탁용역 인건비(추정금액) 산정내역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지부/
2-3단계 시설관리지부/특수경비지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별첨자료> 1. 임금설계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관련 설명자료

1. 위탁용역 인건비 설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도 않아

정부세종청사의 비정규직(용역)노동자의 임금이 정부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음.

2015년부터 시작된 용역위탁계약(1단계 시설관리, 2-3단계 시설관리, 특수경비)을 분석한 결과, ①2015년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2014년 노임단가를 적용(모두)하고 ②월 근무일수도 26일이 아닌 25일로 산정(1단계 시설관리, 2-3단계 시설관리)함. 또한, ③초과근무도 실제근로보다 적게 산정(1단계 시설관리와 2-3단계 시설관리의 주간기사)하고 ④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업무(1단계 시설관리와 2-3단계 시설관리)도 있음.

만일, 위의 네 경우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제대로 적용한다면 낙찰률을 감안하더라도 시설관리주간기사의 경우, 월 172,877원, 교대기사의 경우 월 302,401원의 임금이 상승됨.

1) 시중노임단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2015년의 경우, 2015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함. 그러나 2013년 9월에 조사된 2014년 노임단가가 적용된 사례가 발견됨.

시설관리는 용접원, 특수경비는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이 적용됨. 2014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일급 2,656원과 824원, 월급(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적용, 낙찰율 미적용) 69,388원과 21,527원이 적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됨.(아래 <표1> 참고)

<표1>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14. 12. 작성)

구분	안전관리사	작업반장	용접원	단순노무종사원
2014년 제조노임단가 (2013. 9. 조사)	104,663원	88,642원	70,615원	63,326원
2015년 제조노임단가 (2014. 9. 조사)	105,970원	90,278원	73,271원	64,150원

2) 월 근무일수

시설관리 용역위탁계약의 인건비 산출기초에는 월간 근무일수가 '25일'로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에 따르면, '2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산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지부/
2-3단계 시설관리지부/특수경비지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1주일의 근무일(5일)과 주휴일(1일)을 월간 평균하면 '26.07일'임.

3) 초과근무시간

시설관리 주간기사의 경우 인건비 산출기초에는 초과근무시간이 월 1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평일 30분씩의 초과근무를 기준으로 월평균초과근무시간을 산출할 경우 초과근무시간은 약 10.86시간(=0.5시간×5일×365일÷12개월÷7일)임.

4) 근로기준법 상 가산임금 미적용

인건비 산출기초에는 2014년 시중노임단가(8시간 기준)를 1일 소정근무시간(8시간)으로 나눈 '초과근로수당 단가'에 월평균초과근무시간(10시간)을 곱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함.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위 3)에서 지적했듯이 월평균초과근무시간은 10.86시간이므로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은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하여야 함.

<표2> 초과근로수당 산정

<p>1) 정부의 임금설계: 초과근로수당 단가 = 2015년 시중노임단가 × 낙찰률 ÷ 8시간 2) 근로기준법 상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가산: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시간(10.86시간) × 초과근로수당 단가 × 150%</p>

5) 위 4가지를 모두 옳게 적용한다면,

월 임금(산출내역서 기준)은 주간기사의 경우 최대 월 172,877원, 교대기사의 경우 302,401원이 상승됨.(<별첨자료2>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 위탁용역 인건비(추정금액) 산정내역서 참고)

2. 정부가 잘못 산정한 임금, 업체는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정부의 임금설계가 애초 잘못되었고 ①잘못 산정된 그 임금마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함(1단계 시설관리, 특수경비). 또한, ③최초 정부의 임금설계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용역업체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특수경비)

1) 임금지급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물론이고 계약특수조건 제30조(적정임금 지급 등) 제2항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정부세종청사 시설관리 위탁용역 원가계산서 ÷ 조달물자구매긴급입찰공고 추정가격(부가세 포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지부/
2-3단계 시설관리지부/특수경비지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내역을 분석한 결과, 1단계 시설관리의 경우 다음과 같이(아래 표<3> 참고) 걱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3> 1단계 시설관리 용역노동자 임금지급 적정성 비교

구분	임금구성	①인건비 산출내역	②낙찰률 (추정가격대비)	③낙찰률 적용 (①×②)	④근로계약서	적정성 여부
주간 기사	기본급	1,765,375	86.174%	1,521,294	1,612,517	적정
	초과근무수당	88,270		76,065	80,620	
	급식비	80,000		68,939	70,000	
	교통비	76,000		65,492	67,000	
합 계	2,009,645	1,731,790		1,830,137		
교대 기사	기본급	1,765,375		1,521,294	1,487,579	부적정
	초과근무수당	379,561		327,082	319,791	
	급식비	80,000		68,939	70,000	
	교통비	76,000		65,492	67,000	
합 계	2,300,936	1,982,807		1,944,370		

(단위 : 원)

주간기사와 교대기사에게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인건비산출내역 상 임금에 낙찰률을 적용한 수준(위 표<3> 중 ③낙찰률 적용(①×②))이상이어야 함. 그러나 교대기사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임금(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인건비산출내역 상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간기사와 교대기사 각각의 근로계약서 상 임금(실제 지급되는 임금)과 인건비산출내역 상 임금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을 주간기사와 교대기사의 인원수를 곱하여 산출한 임금 총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1,830,137-1,731,790) \times 22(\text{명}) + (1,944,370-1,982,807) \times 68(\text{명}) = (-)449,884$$

비교한 값은 음수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교대기사와 관련하여 적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인하여 전체 임금지급액이 걱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특수경비의 실제 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6,500원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 임금은 정부지침을 밀돌고 있음.

아래와 같이 2014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설계하더라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지부/
2-3단계 시설관리지부/특수경비지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보호지침>에 의하면 특수경비의 시급은 6,790원($63,326(2014년\ 시중노임단가) \times 0.8578(추정가\ 격\ 대비\ 낙찰율) \div 8 = 6,790$) 이상이어야 함.

2) 상여금 미지급

특수경비의 경우, 정부설계(원가산출내역서)에는 포함되어 있던 상여금(기본급 100%)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특수경비의 상여금은 2014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약 977,778원,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 수준인 시급 6,5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더라도 약 936,000원임.

<표4> 특수경비 관련 상여금 산정

특수경비의 상여금은 기본급 기준 100%임.

1) 2014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 $7,916 (=63,326/8) \times 144\text{시간} = 1,139,868\text{원}$.

- 낙찰률을 적용하면, $1,139,868 \times 0.8578(추정가격\ 대비\ 낙찰율) = 977,778\text{원}$.

2) 현재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 $6,500 \times 144 = 936,000\text{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지부/ 2-3단계 시설관리지부/특수경비지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별첨자료> 2. 정부세종청사 1단계시설관리위탁용역 인건비(추정금액) 산정내역서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 위탁용역 인건비(추정금액) 산정내역서

NO	요율 (투찰율)	제조 노임단가	주간기사 초과시간	초과근로수당 적용	근로일수	주간기사			교대기사			비고			
						산정(추정)금액	근로계약서상 금액	차액	산정(추정)금액	근로계약서상 금액	차액				
1	미적용	2014년	10시간	100%	25일	1,990,645	1,830,137	- 160,508	2,281,936	1,944,370	- 337,566				
2		2015년				2,060,365	1,830,137	- 230,228	2,362,612	1,944,370	- 418,242				
3	0.86%	2014년	10시간	100%	25일	1,734,352	1,830,137	95,785	1,985,350	1,944,370	- 40,980				
4					26일	1,795,203	1,830,137	34,934	2,046,201	1,944,370	- 101,831				
5					150%	25일	1,772,382	1,830,137	57,755	2,148,879	1,944,370	- 204,509			
6						26일	1,833,233	1,830,137	- 3,096	2,209,730	1,944,370	- 265,360			
7					10.5시간	100%	25일	1,740,893	1,830,137	89,244	1,985,350	1,944,370	- 40,980		
8							26일	1,801,744	1,830,137	28,393	2,046,201	1,944,370	- 101,831		
9			150%	25일			1,782,194	1,830,137	47,943	2,148,879	1,944,370	- 204,509			
10				26일			1,843,045	1,830,137	- 12,908	2,209,730	1,944,370	- 265,360			
11			2015년	10시간			100%	25일	1,794,441	1,830,137	35,696	2,054,910	1,944,370	- 110,540	
12								26일	1,857,582	1,830,137	- 27,445	2,118,051	1,944,370	- 173,681	
13					150%	25일		1,833,906	1,830,137	- 3,769	2,224,610	1,944,370	- 280,240		
14						26일		1,897,047	1,830,137	- 66,910	2,287,751	1,944,370	- 343,381		
15					10.5시간	100%		25일	1,801,229	1,830,137	28,908	2,054,910	1,944,370	- 110,540	
16								26일	1,864,370	1,830,137	- 34,233	2,118,051	1,944,370	- 173,681	
17			150%	25일	1,844,088	1,830,137	- 13,951	2,224,610	1,944,370	- 280,240					
18				26일	1,907,229	1,830,137	- 77,092	2,287,751	1,944,370	- 343,381					

* 투찰율은 0.88이지만 원가(추정가격)대비로 환산하면 0.86%임. 위 표에서 요율을 미적용한 2,009,645(주간)과 2,300,936(교대)이 원가설계 상 기준임금이며,

* 기준임금에 요율을 적용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노임단가를 2014년치로, 주간기사 초과근로를 10시간(교대기사는 43시간으로 이 부분은 무관), 가산임금을 100%만 지급하고, 근로일수도 25일로 산정했을 때와 각각의 문제를 제대로 적용했을 때의 임금차이를 비교한 것임